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국회(임시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5.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완화

개정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u>1개월 이상</u> 수행하지 아니한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u>6개월 이상</u> ----------

현 행	개 정 안
경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완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현행법 제19조[1]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센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가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고, 2024년 예산은 550백만원(지방비 100%)임.

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당연취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센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센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이후 사업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센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센터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유예되는 효과가 나타나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센터 사업 재개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센터 운영의 지속성에 따른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는 2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의 장기간 사업 중단을 허용함에 따라 사업 성과 저하 및 책임감 약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 제19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데, 장기간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정 유예 기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계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3]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3개월 이상, 「가상융합산업 진흥법」[4]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소방장비관리법」[5]에 따른 소방장비센터는 6개월 이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에 따

3) **「식생활교육지원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7)에 따른 인력지원센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률안 일괄정비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나. 부칙(적용례)

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신법의 시행일부터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입법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개정안과 같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신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수 있음.[9]

또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10]에 따르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9) 「법제이론과 실제」 p852, 국회법제실, 2024

10)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